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2159-1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5.0 업무 가이드북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50 업무 가이드북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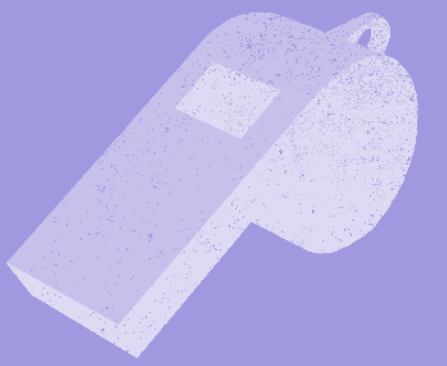

공익제보만큼 중요한 것,
바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서울시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3년 8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별도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2014년도부터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익제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제보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 자문,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안심변호사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변호사는 공익제보자들의 고민 상담과 함께 익명을 원하는 제보자에 대해서는 대리 신고를 해줌으로써 신분노출을 꺼리는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는 등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상 공익제보는 여러 법령상의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비롯,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까지를 모두 통칭하고 있어,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다. 이러한 공익제보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적인 고충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2014년 12월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가이드 북」을 발간한 이래 매년 새로운 내용이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가이드북 5.0에는 관련 통계 등 현행화한 기본 현황자료와 함께, 2019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물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19.10.17.)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모두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번 가이드북 개정판이 서울시 각 기관 공익제보 업무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2019년 12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차례

제1장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1–1. 공익제보의 개념 … 10

1–2. 공익제보의 효과 … 13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 16

1–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 18

제2장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4

자료 1_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 29

자료 2_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43

제3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① 부패신고

3–1. 부패신고란 … 52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 54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 60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 69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 79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 판례 … 83

자료 3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 87

제4장 시 소관 공익제보 ② 공익신고

4–1. 공익침해행위 … 92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 101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 105
4—4. 공익신고 조사 사무 ... 118
4—5. 서울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130
자료 4_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 134

제5장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5—1. 상담 ... 142
5—2. 접수 ... 145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 149
5—4. 심사 및 조사 단계 ... 157
5—5. 제보 처리 단계 ... 162
5—6. 보호지원 상담 ... 165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 170
자료 5_ 공익제보 운영관련 Q&A ... 175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부록 1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188
부록 2_ 공익신고자 보호법 ... 219
부록 3_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238
부록 4_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 251
부록 5_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 266

01

공익제보란 무엇인가?

1–1. 공익제보의 개념
1–2. 공익제보의 효과
1–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1–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1 – 1
공익제보의 개념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통칭한다."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제1호 –

사전적 정의

"불법이나 부정행위와 관련된 조직의 비밀을 허가 없이 알리는 개인의 활동을 지칭한다. 공익제보는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에 기초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1]

용어의 연원

• 공익제보를 영어로 Whistleblowing, 즉 "호루라기 불기"라고 한다. 영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stle-blowing, term used to characterize the activities of individuals who, without authorization, reveal private or classified information about an organization, usually related to wrongdoing or misconduct. Whistle-blowers generally state that such actions are motivated by a commitment to the public interest."

국 경찰들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착안한 용어다.

네덜란드에서 감시인을 "bell-ringers", 즉 "벨을 울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고" 행위자를 표현하는 서구 사회의 고유한 사회적 호칭이었다.[2]

- 1970년대 미국 시민운동은 공익제보 행위의 긍정성을 부각하기 위해 informers(정보원)와 snitches(밀고) 등의 부정적 의미를 담은 단어 대신, "whistleblower"(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를 사용하였다.[3]
- 이러한 아이디어는 80년대부터는 법률 용어로서도 사용되어, 공익제보를 가리키는 보편 용어로 사회에 정착하였다.

  다음은 법률 명칭에 명기된 사례이다.

  – Millitary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8

  – Whistleblowing Protection Act of 1989

  –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 일본의 경우, 초기 내부고발(內部告發)로 지칭 사용하였으나, 내부고발이라는 용어에 밀고나 배신이라는 어두운 이미지가 강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법적 용어로 공익통보자(公益通報者)라는 용어를 채택, 사용하고 있다.

  – 공익통보자 보호법(公益通報者保護法, 2004)
- 우리나라는 80년대부터 양심선언으로 흔히 통용되었으며, 9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일본과 같이 내부고발로 지칭 사용하였다. 그러나, 미·일과 같은 이유에서 내부고발 대신 공익제보를 1996년 경부터 참여연대가 사용하면서 통용되었다.

2 Wikipedia 한국 "내부고발자"
3 Wikipedia "Whistleblower"

-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익제보를 지칭하는 법적 용어로는 공적 부패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신고자", 공익침해행위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자" 등의 용어가 각각 쓰이고 있다.
- 2013년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통합하여 "공익제보"로 규정하고 보호 지원하는「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으며, 2015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공익제보 대상에 포함하였다.

명칭 변경에 따른 개념 변화

- "내부고발"에서 공익제보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면, 위법에 대한 제보라면 내부자에 국한되었던 것에서 내·외부 구분 없이 보호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천하였다.
- 또한 "양심선언"에서 공익제보로의 변화에서는, 과거(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한 원인이었던) 언론을 통한 폭로를, 행정기관의 의무 영역으로 인입하여, 합법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서 공익제보로의 변화에는 개별 법률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방지하고, 통합하여 처리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1 – 2
공익제보의 효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869,853건이며, 특히, 지난해에는 958,103건이 접수되어 2013년 대비 9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수된 공익신고 중 38.1%인 712,20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으며,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 처분을 받은 690,899건의 부과금액은 1,45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5년 7월 16일 보도자료 중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절감에 기여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 등에 있어, 부패는 점점 은밀화, 구조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 점검이나 단속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은 부당거래의 단서를 제공하는 공익제보는, 자칫 증발할 수 있었던 공공재정을 회복하는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 이 극명한 예는 2012년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미국의 False Claims Act(부정청구법)은 법에 의한 환수금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보상하는데, 2013년 미 국세청(IRS)은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미 자산가들의 탈세를 도왔다는 증거를 포착해 4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 환수하

고 증거를 제공한 UBS 직원에게 26%인 1억 400만 달러(1천 100억여 원)을 지급하였다.[4]

위험 사고 발생 미연 방지

- 부패와 부정이 가져오는 가장 큰 부정적 결과는 "부실"이다.
-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는 안전 위험요소를 증가시킨다.
- 공익제보로서 기관은 안전 위험요소의 감시와 사전 예방, 사후적 대응과 관련해 정보의 신속한 획득이 가능하다.
- 공익제보는 발생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경고 장치의 기능을 수행한다.

위법행위의 위축 효과

- 내부의 감시자(watcher)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수의 눈에 대한 위법행위자의 부담감은 증대한다.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지원에 대한 성공 사례가 나올수록 위법 행위 사전 예방에 기여한다.

행정처분의 근거

- 공공을 위한 행정기관의 단속 행위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신고"이다.
- 공익제보는 명령지시나 단속기간 설정 등의 다른 근거들보다 계도 및

4 2012. 9. 13 중앙일보 "미 국세청, 탈세 내부고발 1억 달러 포상"

단속 수행을 이끄는 기능을 수행한다.

- 또한, 행정기관의 감시활동이 미치지 못하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낮은 분야의 규제력을 보완한다.

1 –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필요성

"모든 사람은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 UN 인권옹호자 선언 제6조 (b) –

인권적 측면

- 공익제보는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인권으로 정착되고 있다.
- UN 인권옹호자 선언[5]에 의한 UN 인권옹호자 특별보좌관의 보호해

5 유엔총회 결의 53/144 (1998. 12. 9)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 보호하기 위한 개인/단체/기관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6조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a)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관한 정보를 파악, 조사, 입수, 수령,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입법, 사법 또는 행정 시스템에서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b) 인권 및 기타 관련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의견, 정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유롭게 발행, 제공 또는 배포할 수 있다.
(c) 모든 인권 및 기본적 자유가 법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 토의하고 이에 대하여 의견을 형성, 유지할 수 있으며, 여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야 할 인권옹호자의 영역에는 "공익제보자"가 포함된다.[6]

- EU의 유럽회의는 공익제보가 기본권이며 영구 영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는 인권 차원의 보호가 필요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

- 공익제보는 주권자인 시민이 국가의 법규 위반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 벌이는 자발적인 노력이다.
- 공익제보는 행정력을 보완한다. 사회 위험요소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행정력이 감시하여야 할 영역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직접 규제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전문적 지식 부족 등으로 점점 달성이 어려우며, 적발을 한다 해도 직접적 증거 수집은 쉽지 않다.
- 내부 직원, 이해관계자 등 누군가가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추가적 비용이나 인력 없이도 사회 위험요소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 공익제보 보상금 또한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증발할 수 있었던 금액의 일부분을 주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다.

6 2013. 6. 7 UN 인권옹호자 특보 방한 기자회견문

1 – 4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법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01)[7]

- 2001년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① 공직자의 권한남용 및 위법행위 ② 공공예산/재산 등의 사용위법행위 ③ 이에 따른 은폐 유인행위 등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부패행위 신고를 보호 지원한다.
- 법률의 부패행위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7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이러한 포괄형 부패행위 정의는 공공분야 부패행위 적용 대상과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대상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광범위하게 보호지원 하자는 데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011)

• 현재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러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제보를 공익신고로서 보호 지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우리 시는 시 소관 사무(각 법률 조항에 의한 행정처분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7월 24일 180개 법률 위반행위 외에 99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279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특별보호조치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적용되도록 개정하여 2016년 1월 25일 시행하였다.
- 또한, 2017년 10월 31일 279개 법률 위반행위 외에 5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284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강화하고 불이익조치 모니터링을 도입하였으며, 2018년 5월 1일 긴급구조금 제도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발생한 손해의 3배)를 도입하였다.
- 최근 서울시에서 최초 시행한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8년 4월 17일 추가 개정하여 2018년 10월 18일 시행하였다.

기타 개별 법령

- 기타로 여러 개별 법령 및 규칙 훈령은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보상이나 포상, 또는 보호 등의 조항을 두고 있다.
- 이 중 상당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형사(刑事), 세정(稅政), 노동, 정치 관련 법률 등은 아직 공익제보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각각의 포상 및 보상 규정이 다르다.
- 특히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개별법률상 환수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정청구 등을 방지하는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등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한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시행(2020.1.1.)될 예정이다.

공익침해 유형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2017.10.31 개정) 미포함이나 보호보상 규정이 있는 개별 법률
공공의 안전, 건강, 보건 등	농자재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공정한 거래질서	관세법, 국세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농업협동조합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세 기본법, 증권거래법,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환경	산림조합법
근로자생활 안정 및 보호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공공의 복리증진	수산업협동조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가보안법, 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기타	병역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정치자금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0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료 1_「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자료 2_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민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제정 추진과정

일시	주요 추진사항
2012. 3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 (공익심사정책과)
2012. 8	서울시 감사관, 〈공익신고자등 보호지원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서〉 작성 검토
2013. 4. 2	참여연대, 호루라기재단, 한국투명성기구, 공익제보자지원모임 등 추진 단체, 공익제보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부정과 비리를 거부하는 모든 시민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개최 (서울시, 서울시의회 후원)
2013. 4. 9	추진 단체, 공익제보지원조례 청원
2013. 6. 18	감사관/추진 단체/시의회 행자위 전문위원실 조례제정 실무협의 및 추진 단체와 서울시장 간담회
2013. 7. 1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
2013. 8.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 및 시행
2015. 5. 14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16. 5. 19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2017. 9. 2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시 착안 지점

- 자치조례의 가능성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석하였다.
  -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의 “부패신고”는 다른 연원 및 성립 근거로, 법제 상 나뉘어져 접수 처리되고 있다.
  -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일선에 접수되는 제보의 경우, 적용에 있어 양 법 간의 경합이 이루어지는 예가 상당하다.
  - 이에 제보 접수 단계를 통합 처리해 위법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익신고”와 “부패신고”를 통합하는 “공익제보”라는 개념을 구상하였다.
- 조사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공익신고의 접수기관(제6조제2호), 공익침해행위 조사기관(제6조제2항, 제10조),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조사기관(제22조제3항), 보호조치 협조기관(제25조)의 지위를 아울러 가진다.
  - 조례에 공익제보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였다.
- 시민사회와 관이 협력하는 형식의 조례 제정 모델을 창출하였다.
  - 관의 반부패 과제는 시민사회와의 상호 소통으로 성과가 증대한다.
  - 조례 추진 단계부터 반부패 운동 단체와의 상호 교류로 진행하였다.
  - 반부패 단체들은 그간의 활동 경험에 입각하여, 변호사 대리 신고제, 민간 접수창구 등의 유용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례 속 공익제보 활성화 추진방안

- 공익제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제도화하였다.
  - 공익제보지원위원회라는 주요 사건 심의, 보호보상 심의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였다.

–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공익제보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시 공익제보를 총괄 관리하게 하였다.

– 공익제보 처리 현황을 시장에게 월별, 시의회에 분기별로 보고하게 하였다.

• 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채택하였다.

– 변호사법 상 행정처분 청구 대리행위의 직무(제3조)와 비밀유지 의무(제26조)에 근거해 공익제보자가 익명 유지를 원할 경우, 변호사의 대리신고를 허용하였다.

•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를 인정하였다.

– 시민단체를 통한 공익제보에 달리 차별을 두지 않게 함으로서 시민단체들의 반부패 활동을 위한 상담 등 절차를 제도화하였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5.5.14)

•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항을 추가하였다.

–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사항 중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 강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였다.

– 공익신고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2014.9.2)되었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6.5.19)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고,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해 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다.
-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기준을 공익신고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는「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상금 산정기준을 상위법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고유형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지급된 보상금 및 구조금이 신청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추가하였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017.9.21)

-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100분의 30)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2019. 1.17.)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 공익제보를 접수, 분배,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 서식 등을 정하였다.
  - 특히, 공익제보를 분배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피제보자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 피제보자를 처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공익제보 처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공익제보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제보 책임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
-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관한 사항(변호사 대리 제보, 보호·보상제도안내문 통지, 보상금 선청서 서식, 제보자 신분 비밀보장)을 규정하여 공익제보의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자료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35호, 2017. 9.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4., 2016.5.19., 2017.1.5.〉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상의 부패 신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9. “내부 공익신고자”란「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5.19〉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및 제11조의2에 따른 포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4〉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위원회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

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제5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5.〉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

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제11조(보상금) ① 공익제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한다. 〈개정 2016.5.19〉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가. 지방세의 부과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17.9.21〉

③ 보상금은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며, 상한은 두지 아니한다.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⑦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5.〉

⑧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포상금) ① 시장은 공익제보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6.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5.19]

제12조(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제목개정 2016.5.19]

제12조의2(보상금 및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9]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④ 시가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

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통하며 담당관은 월별로 기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5.〉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명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기타 법인 등이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제1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고·접수된 공익제보부터 적용한다.

자료 2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17.] [서울특별시규칙 제4256호, 2019. 1. 17.,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공익제보의 접수) ①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의 공익제보 접수자(이하 "접수자"라 한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공익제보를 접수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사무(위임·위탁사무를 포함한다)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2.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피제보자를 특정하고 있는지 여부

4.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② 접수자와 분배자(접수자로부터 공익제보 관련 서류를 인수하여 공익제보를 처리할 사람을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공익제보자에게 관계 기관에 직접 제보를 하도록 안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익제보자에게 보완을 요청

제4조(공익제보의 분배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효율적인 공익제보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익제보 통합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고, 통합접수창구로 접수된 공익제보의 분배자가 된다.

② 센터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의 공익제보 해당 여부 및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접수 또는 이첩 받은 공익제보를 그 내용에 따라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 부서 또는 시의 출자·출연기관(이하 "기관·부서"라 한다)으로 분배한다. 다만, 시 공무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위법사항이 포함되는 등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의 감사부서로 분배할 수 있다.

④ 센터는 공익제보 분배 시에 공익제보를 분배받는 기관·부서에 공익제보자의 신분노출 방지에 관한 주의 안내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제보의 처리) ① 센터로부터 공익제보를 분배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익제보 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하며, 처리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하는 등 공익제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익제보를 분배 받은 기관·부서의 장은 피제보자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인 경우에는 피제보자를 해당 공익제보의 처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처리자는 공익제보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강이나 강조 등의 이유로 중복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접수된 공익제보를 기준으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처리함을 공익제보자에게 안내하고 중복된 다른 접수 제보를 종결할 수 있다.

제6조(제보의 취하) ① 공익제보자는 제기한 제보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보가 취하된 경우에도 기관·부서의 장은 제보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공익제보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7조(공익제보 책임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제보 상담·접수·처리, 공익제보자의 보호 및 그 밖에 공익제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제보 책임관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시 부서의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공익제보의 대리 제출)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의 단서에 따라 공익제보를 대리하여 제출하는 등 공익제보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촉된 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대리하여 공익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제보서에 대리 제보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사가 공

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대리 제보된 공익제보의 처리가 완료되어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변호사에게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제보자가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 제보한 변호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 등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증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으며, 공익제보자 본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보상제도의 안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익제보자(공익제보를 대리한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안내문을 통지한다.

1. 공익제보자가 처리자에게 보호·보상제도의 안내를 요구하는 때
2. 처리자가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익제보의 내용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을 통보하는 때

제10조(보상금의 신청) 공익제보자는 조례 제11조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분 비밀보장) 공익제보 접수자·분배자·처리자 등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익제보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관간 협의 및 협조) 공익제보 책임관은 공익제보의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공익제보자 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4256호,201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제보서

별지포함 총[ ]쪽

제보자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휴대폰		이메일	
	주소*				
	※진행상황 및 결과 수신처 [ ]휴대폰 [ ]이메일 [ ]주소				
피제보자 (제보대상)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직업		
	주소				
제보내용					
제보 취지 및 이유					
증거서류	[ ]있음(별지제출) [ ]없음				
비고					

신분 공개 동의 여부	1. 서울특별시 심사·확인과정 앞으로 귀하의 공익제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심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 ]동의 [ ]부동의 2.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제보가 조사기관에 이첩(송부)되는 경우, 조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합니다. [ ]동의 [ ]부동의

위와 같이 제보합니다.

20 . . .

성명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공익제보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 제보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제보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제보자 등은 공익제보 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혹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보자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요건
보상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의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최고 한도 제한 없음,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
포상금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보에 의하여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신청서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소속			
	직업 (직위)			

② 제보내용	접수번호		제보일자	
	제보내용(제목)			

③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 있음 (금액 :) [√] 없음

④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03

시 소관 공익제보 ①부패신고

3-1. 부패신고란
3-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3-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3-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3-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3-6. 부패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자료 3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3 – 1
부패신고란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

부패신고의 정의

- 부패신고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에 규정되어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 부패행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해당 조항의 용어 설명

- 공직자의 부패행위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직무"란 공직자가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집무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해당 공직자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외관상 직무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도 부당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법령을 위반하여"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에 위반하여 행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법령이란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반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서 "이익"이란 재산적 이익 뿐 만이 아닌, 이익 수령자의 정치적, 경제적, 법적,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을 요한다.

3 – 2
부패신고 대상의 범위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

대상 설명 ① 공직자의 부패행위

- 부패방지법 상의 부패 신고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다른 법률에 따른 공무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무원 외의 공직유관단체의 목록은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데 ① 한국은행 ② 공기업 ③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단체 ⑥ 업무위탁/대행 ⑦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⑧ 기타 공공기관 으로 분류된다.

• 2019년 6월 인사혁신처 고시(변동일 2019.7.1)를 근거로 한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직유관단체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서울시 및 자치구의 공직유관단체 현황 (2019.7.1.기준)

재산공개 기관(굵은글씨), 시 취업제한기관(색글씨·30개)

기관명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보조 등 재정지원	재출자/재출연	업무위탁/대행	임원 선임
80(공개 19)		29(공개 5)	6(공개 2)	8(공개 0)	2(공개 0)	35(공개 12)
서울특별시(80)	서울특별시(35)	서울시설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사)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서울장학재단**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주)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주)서울메트로환경 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소사원시선운영(주)	(주)탄천환경 (주)서남환경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재)서울시복지재단**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테크노파크 **(재)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재)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서울특별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연구원** 서울디지털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

서울특별시(80)	강남구(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재)강남복지재단 (재)강남문화재단
	강동구(1)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2)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재)강북문화재단
	강서구(1)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1)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2)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재)광진문화재단
	구로구(2)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재)구로문화재단		
	금천구(2)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재)금천문화재단		
	노원구(1)	노원구서비스공단				
	도봉구(2)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재)도봉문화재단
	동대문구(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문화재단
	동작구(3)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동작복지재단 동작문화재단
	마포구(3)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마포문화재단
	서대문구(1)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초구(2)					(재)서초문화재단 (재)서초장학재단
	성동구(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재)성동문화재단			
	성북구(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재)성북문화재단**
	송파구(1)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2)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재)양천사랑복지재단
	영등포구(2)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재)영등포문화재단
	은평구(2)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재)은평문화재단
	용산구(2)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재)용산복지재단
	종로구(2)	종로구시설관리공단				(재)종로문화재단
	중구(2)	중구시설관리공단	(재)중구문화재단			
	중랑구(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재)동작문화재단 신규지정

※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지정제외

※성북문화재단 기관장 비공개→공개 전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기관장 공개→비공개 전환

부패신고 대상 설명 ② 법령위반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부패신고 대상행위 두 번째는 예산사용 및 공공재산의 취득 및 관리,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 여기에서 공공기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이러한 신고 적용 대상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사기업이나 타 기관이 포함된다.**

이는 부패행위가 반드시 "공직자"에 의하여만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공기관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 관리하는 사인(私人) 또는 사기업 등도 부패 행위자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국고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사회복지기관, 회계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사기업, 발주받은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위반하여 부실시공한 건설사,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보험비를 청구하는 의료기

관의 행위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이러한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최근 4년 간 부패행위 이첩 사건 1240건 중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관련이 940건(75.8%)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납품 부정이 119건(9.6%), 예산·회계 부정이 104건(8.4%)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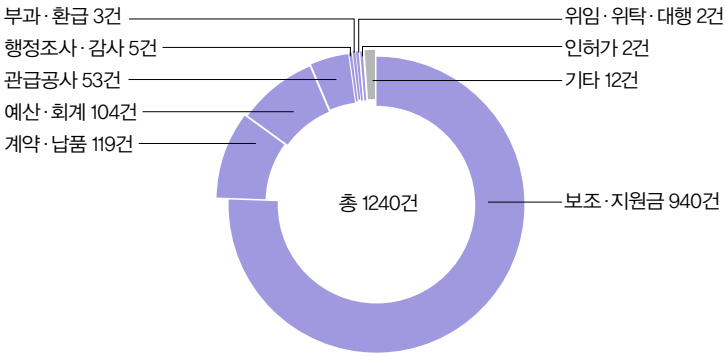

• 특히, 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연구·개발, 문화·체육·관광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였으며, 환수 대상액만 539억 8천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부패신고 대상 ③ 부패행위나 그 은폐를 제의 강요하는 행위

• 부패행위는 통상 공모의 과정을 거친다. 그 방식은 부당한 강요, 회유, 권유, 제의, 유인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일체의 행위 또한 부

8 국민권익위원회 심사정책과-3409(2018.12.10.)호에 의거 제공받은 자료임.

패행위로 규정된다.

- 또한 부패행위 은폐를 위한 제의 및 강요 역시 부패행위로 규정된다. 허위 증언, 축소 보고, 자료 조작 등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3 – 3
신고 대상인 부패행위의 유형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

부패행위의 처벌 유형

-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2월 발표한「부패신고 접수 처리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현황(2013년 말 기준)」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포함)과 민간부문의 적발 부패행위 건수가 6:4의 비율이었다.
- 부패행위 처벌 유형별 건 수로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사기(편취)"가 27건(30.0%), 형법 상 "업무 부적정"이 16건(17.8%),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이 13건(14.4%) 순이었다.
- 민간 부문은 형법 상 "사기(편취)"가 477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 및 유용"이 67건(11.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합계	증수뢰	공금 횡령/ 유용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위반	문서 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배임	사기 (편취)	업무 부적정	기타*
합계	678	11	75	32	6	6	13	504	22	9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포함)	15	3	2	–	–	2	–	7	–	1
광역자치단체	11	1	1	5	–	2	–	2	–	–
기초자치단체	26	1	2	2	4	2	1	7	7	–
교육자치단체	3	–	1	–	–	–	–	–	2	–
공직유관단체	35	2	2	6	1	–	6	11	7	–
민간부문	588	4	67	19	1	–	6	477	6	8

*기타 : 비밀누설, 논문대작, 업무방해, 품위손상 등

보건·복지 분야 부패 유형[9]

-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등 : 아동인원과 보육시간 및 종사자 등을 허위 등재
  - 실제 보육시간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 또는 시설 상근근무자를 허위로 등재하여 보조금을 횡령

9 이하는 2014. 11. 4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pp.51~56을 전재한 것이다.

사례

– 보육시설원장이 보육을 받지 않은 아동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 등재하거나 퇴소한 원생을 퇴소처리하지 않으면서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을 미지급하는 수법으로 약 1억원 횡령

– 아동센터의 경우, 자신의 처를 상근 근로자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교육교사 등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과소 지급하는 수법을 통해 수천만원 편취

•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 등 : 부대비용 과다계상 및 허위 서류 작성 빈발

– 요양병원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및 진료 횟수 부풀리기 및 자가 요양사 시간 외 허위 등재

– 평소 거래하던 업체와 공모해 허위로 매출서류를 작성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

사례

– 요양병원 운영자가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진료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을 동원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약 6천만원 편취

– 사회복지관장이 경로식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재료 구매 대금 등을 부풀려 결제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과 노인요양센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수용 후 그 수입금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 사회단체 운영자가 물품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허위매출 전표를 발행하거나, 지급해준 식대와 유류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6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횡령

고용·노동 분야 부패 유형

- 청장년 인턴 사업을 악용해 인턴 사원으로 허위 채용하거나 퇴사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 편취
-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급여내역을 부풀리고, 참여자의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급여 일부를 임의 공제 후 지급

사례

– 직업전문학교에 종사하는 자가 청년취업 인턴제를 악용해 새로 취업한 자로 위장신고하여 약 1천5백만원의 보조금을 편취

– 지역실업자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학원장이 허위로 수강생을 등록해 훈련비 등 수억원을 편취

–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하는 센터 소속 요양사들의 급여내역을 허위로 꾸며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수천만원 편취

연구개발 분야 부패 유형

- (대학 연구과제 보조금 횡령) 연구과정에 참여한 보조연구원 인건비 편취
  –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보조 연구원의 통장을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인건비 횡령 및 연구원 허위 등록하는 수법
  – 연구 과제 편법 수행 및 허위 정산 등

사례

– 국립대 조교수는 지자체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을 연구

원으로 참여시키고도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교 지원금 횡령

– 국립대 교수는 정부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영리기업의 대표이사직을 겸임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지원금 50%를 리베이트로 수수

– 대학 교수가 현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물품을 구입하면서 시세차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횡령

• (산업체 연구과제 보조금 횡령) 인건비·경비 등으로 허위 지출 및 계약 빈발

– 보조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연구에 수행되는 인건비와 각종 경비 및 자재구입비 등으로 충당한 후 허위 정산

– 친인척과의 허위 계약 및 용역 등을 수행한 것처럼 허위서류 작성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횡령

사례

– 연구소로부터 378억원을 지원받아 전차엔진을 개발하는 자가 자기 회사 에 연료비, 연구원 인건비를 엔진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하여 29억원을 횡령하고 원가를 부풀려 42억원 편취

– 해양플랜트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자가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15억원 횡령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 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약 4천만원 횡령

농·어업 분야 부패 유형

• (농·축산업종사자들의 보조금 편취) 농업시설 공사대금 과다 계상, 허위서류 작성·제출 등

– 공사업체와 공모해 각종 농업시설 공사대금을 편취하고, 단가 및 수량 등을 부풀려 보조금 편취

– 구제역 예방 살처분 등 긴급히 시행되는 특정 보상금 지급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원부 및 농장일보 등을 조작하는 수법

사례

– 화훼육성 시범단지 육성자로 선정된 자가 생산단지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공사업체와 공모하여 자기부담 없이 부품단가 및 수량,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

– 쌀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관할관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쌀농사를 지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해 직불금 부당 수령

–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을 운영하는 자가 직영농장의 구제역 돼지 살처분 과정에서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약 23억원 상당 편취

• (임·어업종사자들의 보조금 편취) 자재 등 원재료 허위구입, 자부담 부분 허위 정산, 면세유 편취 등

사례

– 표고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불량 표고목을 저가로 납품받고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편취

– 약용시설 가공업자가 보조금 및 자부담 등 사업비 2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억원 상당을 편취
– 어촌계장 및 계원 등이 어촌계장 날인만으로 조업증명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20,000리터의 보조금을 횡령
– 어촌계장이 대형교량 건설과 관련한 어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

문화·체육 분야 부패 유형

- (청소년 시설·공예공방 등 사업운영자) 위탁 및 보조 사업자 등이 공사 및 장비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횡령
- (문화 예술 및 문화재 사업) 문화행사 보조금 허위 정산 및 사찰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의 허위 공사와 정산 등 수법
- (지자체 체육회 관계자)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수단의 숙박비와 식사비 및 출전비 등을 과다하게 부풀린 후 횡령

사례

– 공예공방 사업 수행자가 장비 구입비를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보조금을 편취
– 지자체로부터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 장비를 구입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천만원 횡령
– 시의 문화재 전승 보조금을 총괄하는 자가 보조금의 일부를 회원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하여 횡령

– 체육회 전무로 있는 자가 경기력 향상 지원금을 숙박비, 식비, 출전비 등으로 부풀려 약 1,200만 원 횡령

산업 분야 부패 유형

- (중소기업 시설운영자금 등) 허위 납품서 제출, 라벨 부착 등의 방법 으로 시설운영자금, 장비구입비 편취
- (지역연고사업 보상금 등) 허위 기업 설립, 사업계획 서류 조작 등의 방식 으로 지역연고사업, 국가 균형발전 정책사업 보상금 편취 등

사례

– 청으로부터 글로벌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마케팅 사업 등을 추진하는 자가 가격을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항공료, 골프비 등으로 정산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높게 책정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6억원 편취

– 공단의 클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장비에 허위 사양레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약 6억원 편취

– 지역연고사업 수행자가 친척과 직원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하여 약 1억5천만원 횡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가 공장 건물면적과 기업신용평가 등급을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비와 지방비 수십억원 편취

교통 분야 부패 유형

- (도로공사 과정에서 과다보상 등) 보상업무 공무원과 결탁해 과다 보상 받거나, 보상수급자를 기망해 보상금 일부 편취
- (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편취) 특수용 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용도변경하거나 등록서 위조 및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후 돌려받는 수법

사례

– 지자체 공무원이 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편입된 건축물 등 지장물 보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상대상 건축물 및 지장물을 과다 보상

– 군청 직원이 해수욕장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물 철거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보상금 수급자를 기망하여 보상금의 절반을 편취

–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특수용도용 화물차를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 등록하고, 유가보조금을 약 12억원을 편취

–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화물차에 주기적으로 기름을 주유하면서 실제 주유한 기름의 양보다 많이 주유한 것처럼 카드결재를 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약 3천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 편취

3 — 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제1항 –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10]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통령령, 각 행정기관의 규칙, 공직유관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 법령이다.
- 이에 따라 우리 시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였고, 각 자치구 및 공직유관단체 등도 이를 규정으로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10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행동강령의 내용

- 행동강령은 다음 각 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징계의 종류나 절차 및 효력 등은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행동강령 신고에 대한 보호 지원

- 부패방지권익위법은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대해 제67조(준용규정)에 의하여 보호 지원한다.
- 부패신고에 준용하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분보장(불이익처분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 유지 등)
  - 원상회복 요구나 원상회복 소 제기 시에 불이익 당한 것으로 추정
  -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상의 보호규정 적용
  - 신고자 외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의 방법으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신분보장
  - 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징계처분 및 형의 감경

– 신고 사항은 직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

• 우리 시는 2015년 5월 14일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공익제보 정의에 기존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외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추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신고에 대해서도 보호 지원 한다.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

• 우리 시는 2014년 8월 "금품수수·청탁 방지 "김영란 법" 서울부터 시행한다"는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직무관련 불문하고 처벌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확대, "직무 관련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

– 부정청탁 자발적 신고 의무화,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 처리 시 처벌 강화

– 공직자 직무회피 대상 범위를 본인 위주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추가 확대

– 민간 전문가 채용 시 사적 이해관계 사전신고 및 사후심사제 도입

– 관피아 방지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온라인 공개

– 평상시 안전점검 결과 허위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엔 무관용, 정책결정 문제 발생 시 고위공직자부터 처벌

– "원순씨 핫라인"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메인에 신설

• 2014년 10월 2일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의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해충돌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2016년 2월 18일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이해충돌"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상담관"제 도입〉

– 이해충돌상담관은 이해충돌 상담, 회피신청 처리,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 등을 담당하고,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

〈이해충돌 관리 절차 및 방법 구체화〉

–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직무수행 시 제척, 회피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자가진단을 의무화하고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과 상담 및 회피신청하여 처리토록 함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등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개정하였다.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 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행동강령의 위반 신고는 공익제보로 규정되어 우리 시의 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분	공무원행동강령 및 징계규칙 개정 사항
부정청탁 금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 금지(강령 제6조)** 제6조(부정청탁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특정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2. 특정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특정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4. 청원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구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을 요구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견조회·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의견 등을 제출하는 행위 6.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직무에 관하여 이해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7.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공직자에게 법령·조례·규칙 등의 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하는 행위 8.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청문회·공청회·공개토론회 등에서 그 절차·방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하거나 의견·증거 등을 제출하는 행위 9.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연설·기고·발표 등을 하는 행위 10. 정책의 입안·수행·평가 등을 위해 공공기관과 사업자 등이 공식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자문·고문·진정·탄원·협의 등을 하는 행위 11.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 또는 사업자등의 권익보호에 필요하거나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강령 제7조)**

부정청탁 금지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처리) 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명확히 거절한 공무원은 자신이 받은 청탁이 신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보고받은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2. 직무대리자의 지정 두는 직무재배정 3. 전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에 따른다.
	[징계] ▶공무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 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u>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는 행위 금지(강령 제12조)</u>** 제12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및 5만원 이내의 경조사비·선물 등 3. 제18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4.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5.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6.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7.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8.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등 9.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10.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②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징계] ▶직무상 관련여부 및 대가관계 유무, 수수한 금품 등의 금액 다과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징계처분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및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해임이상 ▶기타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감봉이상 ▶징계와는 별도로 1~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 금액규모(100만원)별 징계기준을 달리한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에서 징계양정기준을 금액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임.
사적 이해관계 충돌방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직무에서 제척, 기피 및 회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강령 제16조)** 제16조(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 2016.2.18〉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에서 제척된다. 1.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이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2년 이내 재직한 법인·단체 또는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다만,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행하는 업무 또는 직위 등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③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또는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때에는 당해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형성된 자 다. 소속기관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라. 그 밖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④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징계] ▶이권개입 금지 의무 위반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u>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겸직을 금하고,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 참석 시 사전 승인 및 신고를 하도록 함(강령 제17조~18조)</u>**
	[징계] ▶외부강의 신고의무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시 징계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u>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직무관련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강령 제10조)</u>** 제10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① 공무원 본인·배우자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직접 또는 제16조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법인·단체 또는 그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을 통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동산·유가증권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다만, 시가가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에 부합하는 가격으로 거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차용, 부동산 임차금지 의무 등 행동강령 위반시 징계

퇴직공직자 재취업 문제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정**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관련 기업 취업 금지(강령 제16조의4)** 제16조의4(퇴직공무원의 취업 제한)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 개정

• 2018년 8월 2일「공무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를 개정하였다.

–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의 토대를 마련함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제도 도입하고 사적 이해관계 관리절차를 마련함

– 권한이 광범위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을 제한하거나 중단시킬 수 있도록 금지 항목을 신설함

– 고위공직자, 인사담당자, 산하기관담당자가 소속 기관,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함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금지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대상에 가상통화를 추가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되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함

– 수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조정함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변경함

3 – 5
부패신고자 보호 지원 사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신분보장 등)제1항 –

신분 비밀 보장

- 국민권익위원회 및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 보장 및 원상회복 조치

-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불이익조치자의 입증 책임

•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불이익조치자는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신변보호 조치

•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조자 및 타 기관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책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신분보장조치 등 보호조치를 준용해 보호한다.

책임의 감면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도 위를 준용한다.
-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포상 및 보상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신고자는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

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5년 10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패행위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하였다.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별표 1]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비고 : "보상대상가액"이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서울시 소관 사무에 관련 한 부패신고자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 시에도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통칭하고 있는 서울시 공익제보는 보상금 산정기준이 신고유형(부패신고, 공익신고)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17년 9월 21일 보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100분의 30)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3 – 6

부패행위 관련 대법원 판례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문 중 –

뇌물의 직무 관련성은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 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도1549, 판결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1994.3.22, 선고, 93도2962, 판결

"수뢰죄에 있어 직무라는 것은 공무원의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원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원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865, 판결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6도582, 판결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

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 2013.9.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뇌물은 의례적 성격이거나 공적으로 사용했다 해도 뇌물이다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부하직원들을 위하여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 뇌물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6.6.14, 선고, 96도865, 판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여도 직무행위의 대가로서 의미를 가질 때에는 뇌물이 된다."

대법원 1999.1.29, 선고, 98도3584, 판결

뇌물의 반환 여부는 뇌물죄 성립과 관계없다

"뇌물은 일단 영득의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소장이 없다."

대법원 1987.9.22, 선고, 87도1472, 판결

"수뢰자가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이를 소비한 후 자기앞수표 상당액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1.29, 선고, 98도3584, 판결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면 직유유기가 성립한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저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 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4.22. 선고 95도748 판결

보호할 가치 없는 비밀 유지 위반은 죄가 될 수 없다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6.5.10, 선고, 95도780, 판결

자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

(2019. 4. 16. 개정, 2019. 10. 17. 시행)

1. 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또는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의 취소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주요내용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범위 명확히 규정

-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범위를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및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등으로 명확히 규정(제2조제7호 신설)
  - 1. 파면·해임 등의 신분상 불이익조치, 2. 징계·정직 등의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등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제62조)

신분보장 조치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기한설정과 행정심판 청구 금지

•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제62조의4 신설)

신분보장 등 조치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62조의6 신설)

구조금 지급 신청권자 확대 및 지급 범위 확대

• 구조금 지급 신청권자를 부패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으로 확대

•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제68조)

–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 조치에 의한 손해에는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따른 손해는 제외

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신설)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

- 부패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 불이익조치의 종류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강화(제90조)
  - 불이익조치 중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 가목)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조치 중 나머지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4

시 소관 공익제보 ②공익신고

4-1. 공익침해행위
4-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4-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4-4. 우리 시 공익신고 조사 사무
4-5. 서울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료 4_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 내용

4 – 1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 (2011.3 제정, 2011.9 시행)

- 2002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공공부분 부패행위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등 여러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그러나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등 민간 및 기업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부터 민간 부문 신고자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 제정에 노력하였다.
- 2011년 9월 3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그동안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분야의 공익신고자까지 법의 보호 지원을 받게

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2015.7 개정, 2016.1 시행)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국민의 건강·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공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공익침해 확산 방지에 저해되고, 공익신고로 드러난 위법행위 관련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면 근거 미비,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이행력 부족 등 신고자 보호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3년 2월 국정과제에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가 선정되었으며, 2013년 6월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가 진행되었다. 2015년 7월 6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공익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범위 확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5년 7월24일 개정, 2016년 1월 시행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기

①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180개에서 99개 추가되어 총 279개 법률로 확대됐다. 해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법률, 아동 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최근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됐던 분야의 법률이 다수 포함된 것이다.

구분	주요 법률
국민 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법률에 미포함된 법률(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② 공익신고와 관련된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뿐 아니라 불합리한 행정처분까지 감경·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③ 파파라치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공익신고자로만 제한하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였다.

④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이 강화되었다. 실태조사 근거 마련,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근거 마련,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 공익신고 통합정보 시스템 규정이 신설되었다.

2016년 1월 22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 살펴보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부 공익신고자의 유형을 추가하였다.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가 제공하는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및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계열회사 관계에 있거나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등을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포상금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지급 사유 및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2017.10 개정, 2018. 5 시행)

-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면을 통하여 내부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성과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신고자의 제출 자료와 진술에 의존하여 송부 중심으로 사건 처리, 전체 혐의적발률이 48.6%에 불과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확인 기능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피신고자, 참고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사실확인 기능을 보완하고 조사 방해·거부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하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7년 10월 31일 개정, 2018년 5월 시행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기

①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확인 행위를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피신고자 등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공익신고자등이 조사·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익신고 등을 하였고, 조사·수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였으며, 다른자에게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③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규정한 별표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32개의 신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고 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일부 조정하였다.

공익신고 대상 추가 법률

연번	소관 부처	법률명
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	보건복지부	결핵예방법
4	경찰청	경찰관 직무집행법
5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7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9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금융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1	기획재정부	담배사업법
12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산림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15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6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법
17	행정안전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8	금융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9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0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3	법무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5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26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7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2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29	행정안전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30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법
3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32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2018.4 개정, 2018. 10 시행)

-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

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8년 4월 17일 개정, 2018년 10월 시행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기

① 변호사가 공익신고 절차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 정보는 봉인 후 본인 동의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보호조치 이행강제금을 강화하였다.

상한금액	부과횟수	부과기한
2천만원→3천만원	연 2회 이내(변동없음)	2년이내→이행시까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
- "공익"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의 이익이란 뜻으로 사회적·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범위가 변화 발전한다. 이에 따라 "공익 침해" 의 개념도 계속적으로 변화·확대되고 있다.
- 다만,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는 "공익침해행위"를 ①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②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11] ③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7.10.31)에 따라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은 기존 279개에서 284개로 상향 조정됨(시행 2018.5.1)

- 즉, 공익침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행위가 별표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 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 따라서, 불법 비자금 조성 등은 일반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나 이 법에서 말하는 공익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 보호 적용 법률 및 벌칙의 범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은 식품위생법 등 11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정하고 , 시행령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 관련)"은 가맹 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69개 법률을 합해 총 180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다.
-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2015.7.24 개정, 2016.1.25 시행)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은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였고, 해상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법률, 아동 학대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99개 법률이 추가되어 총 279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이후 추가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2017.10.31. 개정, 2018.5.1. 시행)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은 방위사업법 등 5개 법률이 추가되어 총 284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5대 공익분야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위반이 아니거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벌칙의 종류 (형법 제41조)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 처분, 정지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 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4 – 2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란 (중략)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제2호–

공익신고

- "공익신고"란 위에서 설명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를 볼 때 공익신고는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대해 감독권·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고·진정 외에도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이나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수사의 단서 제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넓은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신고의 형태	정의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진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사정을 진술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고소	범죄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 하는 행위
고발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수사의 단서 제공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또한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신고제도가 아니라, 이미 개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및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가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는 각종 민원이나 고소·고발 등을 새로이 재정립한 개념이다.

공익신고등

- 공익침해행위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가 필요하다.
-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소송 등에서 공익신고자가 아닌 제3자가 관련 사실을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 이와 같이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와 공익신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 등”이라고 한다.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등

- "공익신고자"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 적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 반드시 내부고발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 공익신고자와 앞에서 설명한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협조행위를 한 사람을 포함하여 "공익신고자 등"이라고 한다. 이러한 협조자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공익신고 기관

-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공익신고 기관"이라고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4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5조는 공공단체 등 2 개의 공익신고 기관을 규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총 6개 유형의 공익신고 기관이 규정되어 있다.

공익신고 기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5조)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조사기관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3. 수사기관 :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4. 국민권익위원회
5. 국회의원
6.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공단 등의 공공단체

• 한편, 우리 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에 시 소관 사무에 대한 공익제보 접수기관에 시의원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등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 접수기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또한 우리 시는 조례로서 시민단체 상담을 통한 제보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른 기관은 해당 기관에 접수 즉시 제보로 인정되어 보호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반해, 시민단체나 변호사는 시에 접수하여야만 제보로 인정된다.

서울시,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2014.5.9)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

1. 반부패 시민단체(호루라기 재단, 한국투명성 기구)에 상담창구 개설
2. 공익제보 법률상담 및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

4 – 3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비밀 보장

① 인적사항 공개·보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나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 대리인이 해당 조치를 신청하면,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③ 신고내용 비공개

-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 등은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허위 신고내용 등의 공개로 인하여 기업 등에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변보호 조치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 신변안전조치)
•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경찰관서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보호 조치

- 보호조치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발생한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크게 불이익조치의 금지, 보호조치,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등에게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이익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이러한 공익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②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인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 전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을 받으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신청인, 불이익조치자, 참고인,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불이익조치 추정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불이익조치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보호조치 결정을 하는 경우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호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 원상회복 조치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 포함)의 지급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불이익조치 모니터링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2017.10.31.)했다.
- 불이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강화를 위해 특별보호조치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설(2015.7.14)했다. 이는 신고당시 불법행위가 특정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인지를 일반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12]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8조)

1. 공익신고자등 또는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허위·부정목적 신고 등 법 제10조제2항 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기간(불이익조치 발생 후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이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신설 2015.7.24〉

•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불이익조치자가 확정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13]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14]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3천만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가능

• 협조자 및 타 기관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은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보호 지원한다.

③ 책임의 감면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4항 〈신설 2015.7.24〉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신설 2015.7.24〉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15]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공익신고가 거짓임을 안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상금

- 내부 공익신고자[16]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5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의 감면 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인해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2015.7.24 개정〉)

16 내부 공익신고자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임.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015.7.24 개정, 2016.1.25 시행)에 따라 공익신고 보상금은 2016년도 1월부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는 부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상금 지급 신청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

공익신고 보상금 산정기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2016.1.22)으로 2018년도부터 30억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보상금)에 의거 서울시 소관 사무에 관련한 공익신고자는 우리 시에도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한편 서울시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로 구분하고 보상금을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했다.

포상금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시행 2016.1.25)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외부 공익신고자에

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보상금과 포상금 비교

구분	보상금	포상금 (2015.7.24 신설)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액의 4~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외부 공익신고자

* 서울시도 상위법 개정에 따라 포상금 신설제도를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했다.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구조금 신청사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7조)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의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자목의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는 제외)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

호 등)에 의거 서울시 소관 사무에 관련한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우리 시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시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익제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익제보자 지원 권고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6항)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 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 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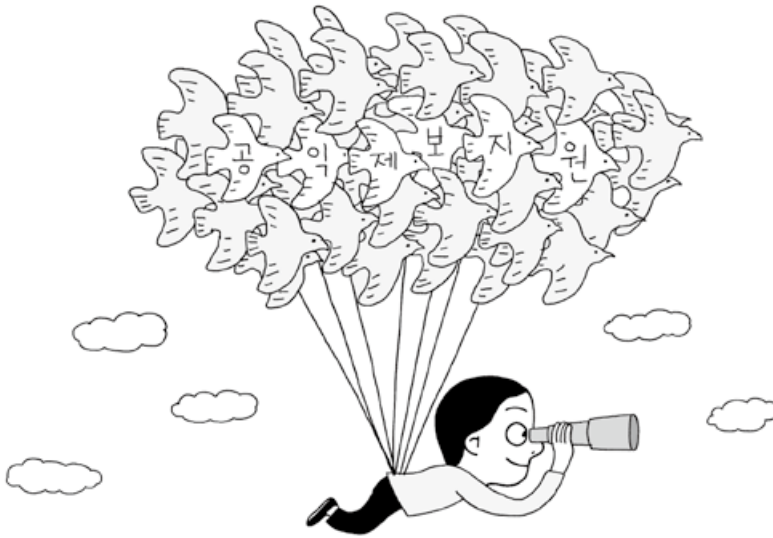

4 — 4
공익신고 조사 사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 우리 시 및 자치구는 소관 사무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시 및 자치구 해당 부서는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대상 법률 총 284개는 5대 공익분야별로 건강분야 56개, 안전 분야 79개, 환경 분야 61개, 소비자 이익 분야 69개, 공정한 경쟁 분야 14개와 추가된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5개로 나눌 수 있다.

• 다음 표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중 5대 공익 분야별로 공익침해행위대상 법률을 정리한 것으로 분야별 중앙부처 소관사무를 참고하여 공익신고 처리시 해당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분야 56개 법률	
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2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4 건강검진기본법	보건복지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처안전처
6 검역법	보건복지부
7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8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9 국민건강증진법	보건복지부
10 국민영향관리법	보건복지부
11 노인복지법	보건복지부
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1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4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16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17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18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무부
19 비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0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2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2 소금산업 진흥법	해양수산부
2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해양수산부
24 식물방역법	농림축산식품부
25 식물신품종 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6 식품산업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8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29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30 양곡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3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2 위생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5 의료기기법	식품의약품안전처
3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37 의료법	보건복지부
38 인삼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3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4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청
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4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43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44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45 종자산업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6 지역관리법	보건복지부
47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48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
49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안전처
5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5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찰청
52 학교급식법	교육부
53 학교보건법	교육부
54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55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5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보건복지부

안전분야 79개 법률	
1 개항질서법	해양수산부
2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3 건설기술진흥법	국토교통부
4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5 건축법	국토교통부
6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7 경비업법	경찰청
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9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10 광산보안법	산업통상자원부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2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14 궤도운송법	국토교통부
15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16 낚시관리 및 육성법	해양수산부
17 농어촌도로 정비법	행정자치부
18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
19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2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22 도로교통법	경찰청
23 도로법	국토교통부
24 도선법	해양수산부
25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7 도시철도법	국토교통부
28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2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3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경찰청
31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32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3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34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35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36 소방시설공사업법	국민안전처
3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38 송유관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39 수난구호법	국민안전처
40 수상레저안전법	국민안전처
4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43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4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46 어선법	해양수산부
4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산업통상자원부
4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4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위원회
50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51 위험물안전관리법	국민안전처
52 유선 및 도선사업법	국민안전처
53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54 자연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55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민안전처
56 재해구호법	국민안전처
5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처
58 전기공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59 전기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60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61 전력기술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62 정보통신공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63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64 주택법	국토교통부
65 지진재해대책법	국민안전처
66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67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68 청소년활동진흥법	여성가족부
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70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민안전처
7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경찰청
7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7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교육부
74 항공법	국토교통부
75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76 항로표지법	해양수산부
77 항만법	해양수산부
78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79 화학물질관리법	환경부

환경분야 61개 법률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3 골재채취법	국토교통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8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9 내수면어업법	해양수산부
10 농지법	농림축산식품부
11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부
12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13 독도 등 도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1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15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17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1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림청, 환경부
19 사방사업법	산림청
2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21 산림보호법	산림청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
23 산지관리법	산림청
2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부
2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산림청
26 소하천정비법	국민안전처
2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부
28 수도법	환경부

29 수산업법	해양수산부
30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수산부
3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부
32 습지보전법	환경부, 해양수산부
33 악취방지법	환경부
3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35 어장관리법	해양수산부
36 어촌·어항법	해양수산부
3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38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별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39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행정자치부
40 인공조명에 관한 빛공해방지법	환경부
41 자연공원법	환경부
42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4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44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4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부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47 지하수법	국토교통부
48 초지법	농림축산식품부
49 토양환경보전법	환경부
50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51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52 하수도법	환경부
53 하천법	국토교통부
5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5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5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57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수산부

58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부
59 환경보건법	환경부
60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부
61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소비자 이익 분야 69개 법률	
1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자치부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16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17 말산업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1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19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20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2 보험업법	금융위원회
23 복권 및 복권기금법	기획재정부

24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2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보건복지부
2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8 산업디자인진흥법	산업통상자원부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노동부
30 산업표준화법	산업통상자원부
31 상표법	특허청
32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
33 새마을금고법	행정자치부
3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35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36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산업통상자원부
3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3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39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40 아이돌봄 지원법	여성가족부
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42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43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4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45 외국환거래법	기획재정부
46 외식산업 진흥법	농림축산식품부
4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48 유아교육법	교육부
49 은행법	금융위원회
5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51 임대주택법	국토교통부
52 입양특례법	보건복지부

53 자격기본법	교육부, 고용노동부
5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55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56 전기통신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5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5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5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미래창조과학부
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6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62 직업안정법	고용노동부
63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64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6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6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67 항만운송사업법	해양수산부
68 해운법	해양수산부
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공정한 경쟁 분야 14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	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5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1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14 한국마사회법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5개 법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법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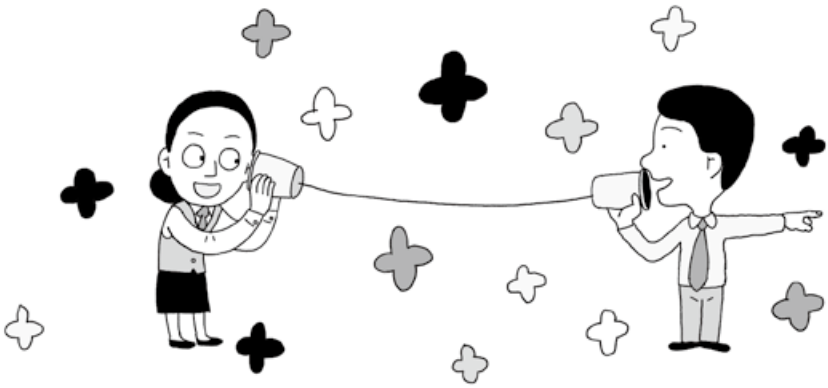

4 – 5
서울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 다음의 표는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공익신고 처리 현황(민원 및 신고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의 공익침해행위 법률을 적용, 행정 조치한 사례)을 조사한 내역이다.

접수 건수	처리내역						보상·포상금	
	행정처분			수사기관 송부·송치 건수		자체종결 건수		
	인허가취소 등 (비금전적처분)	과징금·과태료 등 (금전적처분)						
	건수	건수	부과금액(천원)	송부	송치		건수	금액(천원)
17,294	957	13,976	11,380,604	132	95	2,841	987	8,326

• 총 17,924건이 접수되어 이 중 행정처분은 14,933건(인허가취소 957건, 과징금 및 과태료 13,976건에 부과액수 11,380,604,000원), 수사기관 송부 132건, 송치 95건, 자체 종결한 건은 2,841건이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987건에 8,326,000원이었다.

• 신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소비자이익이 51.7%로 가장 많았고, 안전(22.8%), 건강(12.8%), 환경(12.7%) 순이었다.

유형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
접수 건수	2,215	3,936	2,199	8,944	0
비율	16.2%	19.2%	9.3%	55.2%	0.0%

•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 다음을 이었다.

유형	적용 법률명	접수건
건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73
	공중위생관리법	85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건강증진법	26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12
	식품위생법	1,446
	약사법	43
	의료기기법	23
	의료법	12
	청소년보호법	6
	화장품법	49

안전	건축법	1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도로교통법	3,491
	도로법	1
	동물보호법	41
	사회복지사업법	3
	소방시설공사업법	11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1
	위험물 안전관리법	2
	자동차관리법	156
	전기공사업법	1
	주택법	52
환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대기환경보전법	5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13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6
	폐기물관리법	1,046
	하수도법	1
소비자 이익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1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
	상표법	5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25
	영유아보육법	12
	장애인복지법	1,30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7,15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0

•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은 현재 서울시(자치구 포함)에서 접수하는 공익신고 중 상당수가 시민들의 권익과 생활상의 불편과 관련한 공익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불편사항과 관련한 신고와 여타 공익신고와 구별의 필요성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시민신고'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2018년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284개)되었으며, 신고 접수 역시 2018년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비교해 20.2%가량 증가(14,220건→17,294건)하였다.

"시민신고"에 대한 보호 지원사항

• "시민신고"에 대한 보호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보자의 "신분노출"방지다. 자칫하면 공동체 이웃 간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조사나 단속 과정 중 제보자 신분 노출이 은연중에라도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 또한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에 의하면 공익제보 중 공익신고는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료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내용

(시행 2018.5.1.) (법률 제15023호, 2017.10.31., 일부개정)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279개 → 284개)

- 시행령에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로 상향입법
-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총 99개의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

구분	주요 법률
국민다수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법률 (52개)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도선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 (17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행위가 은밀하여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27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신고는 되었으나, 적용대상 법률에 미포함된 법률(13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범위 확대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의 감면외에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감면범위 확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신설

•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호요건에 추가

– 신고 당시 불법행위가 특정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인지를 시민들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필요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 도입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보호조치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 2천만원 이하, 매년 2회, 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파파라치로 인한 행정력 낭비, 서민의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포상금 제도 도입

-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보상금과 달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

양벌규정 도입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

  ※ 다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기능 강화

- 실태조사 근거 마련
-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근거 마련
- 재조사·재수사 요구권 신설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규정 신설

공익신고 대상 분야 추가

- 기존 5대분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5개 법률(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279개→284개),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

긴급 구조금 제도 도입

- 공익신고로 발생한 이사비용, 치료비용, 소송비용,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서 긴급한 상황에서는 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 보호조치 신청기간이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

- 보호조치 모니터링 강화로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간 점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 공익신고자에서 불익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보호규정 위반 시 벌칙 강화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폭 강화

신고자 신분을 공개하는 경우 최대 징역 5년에서 5천만원 상당의 벌금을,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에서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위반행위	개정전	개정후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8년 4월 17일 추가 개정하여 2018년 10월 시행되었는데, 그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보호조치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임

05

공익제보 처리 가이드

5–1. 상담
5–2. 접수
5–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5–4. 심사 및 조사 단계
5–5. 제보 처리 단계
5–6. 보호지원 상담
5–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자료 5_ 공익제보 운영관련 Q&A

5 – 1
상담

상담 절차의 필요성

- 공익제보의 법정 절차는 “접수”로부터 시작한다. 즉, “상담”은 법정 절차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익제보의 접수를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 상담이다.
-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사람은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 및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담 과정으로 공정하게 처리되고 비밀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다는 초기 신뢰(Rapport)를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 또한, 제보자는 위법이나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주변에 다른 조언 조력자가 있는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기도 한다.

• 서울시는 반부패 시민단체들과 협약을 체결,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제보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

상담 시 체크포인트

상담 준비

• 제보자는 업무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상담하려 한다.
• 전화 상담 후 제보의 내용이 명확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온라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제보할 것을 권한다.
• 그러나 증거를 직접 보아야 할 필요가 있거나, 관련 규정을 즉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또는 제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접 대면 상담할 수 있다.
• 상담 시에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해당 자료들을 준비한다.
• 감사 담당자나 해당 업무를 잘 아는 동료에게 지원을 요청해 함께 상담하는 것도 좋다.

상담 장소

• 제보(예정)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다.
• 외부인 또는 직원의 출입이 잦지 않은 곳을 택한다.
• 제보자가 안심할 수 있게끔 조용하고 방음이 충분한 곳으로 선택한다.

상담 자세

• 차 등을 대접하고 일상적인 화제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제보자의 직업·외모 등으로 선입관을 갖지 않도록 하고, 노령자나 부

녀자 등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춘다.

- 상담내용을 충실히 메모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되짚는 등 진지하게 상담에 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노력한다.
- 부드러운 언행과 태도를 유지하여 억압적인 자세로 인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한다.
- 상담과정에서 주관적인 견해 피력 등은 자제한다.
- 제보자의 말을 끊지 말고 경청하며 결과를 예단하는 뉘앙스의 발언은 지양한다.

상담 결과

- 상담한 내용이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안내한다.
- 상담한 내용이 공익제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제보자에게는 공식적으로 접수할 것을 권한다. 제보자가 주저할 경우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주소를 안내하고 결심이 서면 제보할 것을 권한다.
- 단, 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나 공익제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와 연결해준다.
- 다만 상담한 내용을 첩보로 활용해 조사에 참고하겠다는 발언은 자제한다. 이후 제보자가 노출될 경우 보호지원이 어려우며, 익명 접수한 것으로 착각한 제보자의 항의를 받을 수도, 다른 보상을 요구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시스템을 신뢰하고 정식 접수할 것을 권해야 한다.

5 – 2
접수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공익제보의 처리)제1항 –

공익제보의 방법

•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 기재사항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 사항
2. 공익제보 대상 행위를 하는 자(피신고인)
3.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내용
4. 공익제보 하는 취지와 이유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문서,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나 전화로는 상

담만 가능하다.

– 특정한 양식이 아니더라도 위 사항을 기재한 문서라면 공익제보로 접수 가능하다.

– 공익제보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는 목격담, 특정인에게 청취 등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최소한의 형식이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단순한 의혹 제기는 공익제보로 접수되지 못한다.

• 문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 후 구술로 공익 제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 신고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제보 시에는 공익제보로 인정되지 못한다. 다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의거, 변호사가 대리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패신고의 접수처, 공익신고의 접수처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 접수처는 다음과 같다.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 수사기관

– 위원회

–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현재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로 시행령에 규정

•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한 부패신고 접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한정한다. 그러나 다음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호지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실제적 효과는 거의 같다.

–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우리 시의 공익제보 접수기관

• 우리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의한 공익제보 접수 창구는 다음과 같다. 이는 법 상의 접수 조사기관으로서 우리 시 내의 접수 창구를 세분화, 구체화한 것이다.

① 신고대상 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서울시

③ 서울시 시의원

④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 ①의 공익제보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대표자등은 조치 결과를 공익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6조)

– 공익제보자는 제보 접수 사실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 ②의 서울시 각 부서는 해당 사무에 관련한 공익제보를 상담 받으면 자체 접수 또는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02-2133-3448)로 접수를 안내한다. 자체 접수 조사의 경우, 법정조사 기한 60일 내 조사 완료한 후 통보한다.

5 — 3
제보자에게 필수 공지할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접수 시 확인 사항 ① 형식적 요건 확인

• 신고서(전자문서 포함)의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 기재여부, 증거 첨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의 형식적 요건

① 공익제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 위법행위를 하는자, 공익제보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신고

② 구술 및 전화상담의 경우 서면신고서를 작성토록 요구
(구술 신고 시에도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함)

③ 익명 신고의 경우 보호 대상이 되지 않음에 유의, 다만 시 조례상에는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인 경우는 접수 가능

④ 형식 요건 누락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

-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제보 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제보자에게 요구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이를 답변의 내용으로 한다.
-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가명 신고의 경우 공익제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 또는 가명의 제보라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제보자에게 제보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는 가능하다.
-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과적으로 보호지원을 받기 힘들다. 접수 단계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속하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 특히 신분공개에 대한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법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안을 없애주어야 한다.

접수 시 확인 사항 ② 실질적 요건 확인

- 제보의 내용이 공익제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즉, 해당 제보 내용을 볼 때 “부패 신고”에 해당하는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반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공익제보의 내용적 요건

① 신고내용이 공익제보(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부패신고인 경우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였는지,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셋째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였는지 확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익신고인 경우 첫째,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284개 법률의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둘째,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는지, 셋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또는 공정한 경쟁 등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 공무원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인 경우 첫째 공정한 업무수행, 둘째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셋째 업무숙지의 의무, 넷째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다섯째 인지된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규정된 행동기준 위반여부를 확인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 공익제보 판단이 어려울 때는 일단 공익제보로 간주

※특히 공익신고의 경우, 실제로 5대 공익분야 중 하나 이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전문적·기술적 판단이 수반되므로 신고내용이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단 공익신고로 간주하여 처리

② 허위 제보 즉,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제보하는 경우,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공익제보 대상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온라인 접수의 경우 이를 답변의 내용으로 한다. 다만 이는 종결이 아닌 보완 요구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제2항)은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① 제보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②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③ 공익제보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④ 공익제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⑤ 공익제보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⑥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⑦ 그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의 안내

- 망설이는 제보자에게는, 제보자의 비밀보장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안내한다.

-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공익제보에 해당하는 내부고발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안내한다.
- 내부고발인 경우 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알려주고, 서울시의 공익제보 안심변호사 제도를 안내한다.
- 제보하려는 위법행위에 제보자가 관련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에도 준용되며, 2016년도부터 불리한 행정처분까지 책임감면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안내한다.
- 제보사항에 대한 감사·수사·조사에 협조한 자도 공익제보자에 준하여 보호됨을 안내한다.
- 세부내용 확인 또는 상담은 추후에도 가능함을 안내한다.

제보자의 주의사항 안내

- 제보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이후 직장 내 처신에 각별히 주의 하도록 안내한다.
- 신분상 비밀유지를 위해 제보자 자신도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 피제보자가 제보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보 사실 및 처리과정 등에 관하여 전화 문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소·주민번호·전화번호 등으로 신분이 정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설명

신고의 증거 제시 관련 주의사항

- 증거자료 제시의 전제는 “신고자가 신고 전에 신고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임에 유의한다.
- 증거제시가 불충분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한다.
  - 증빙자료 제시가 불충분하였으나, 사안의 심각성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신고자가 이를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지 여부
  - 긴급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신고자가 증거 제시 없이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 과도한 증거 요구가 신고를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신고 처리과정 중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을 받아 비동의 시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향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사항을 확인한다.

처리기한 공지

- 사건의 처리기한 및 과정을 공지한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처리 규정

① 공익제보 조사 여부 10일 이내 통지 (조례 제13조제3항)

②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연장 (조례 제13조제5항)

언론제보 등 신고내용 공론화의 위험성 안내

- 언론제보 등으로 신고 내용이 공론화되는 경우, 신고자 비밀유지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짐을 안내한다.
- 제보 후 언론사 제보 및 인터뷰의 경우, 공익제보와는 별도로 명예훼손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제보와 무관한 징계를 받는 등 신분상 불이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현실도 충분히 고지한다.

「특정범죄제보자 등 보호법」 준용 안내

- 신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조사기관에 특정범죄제보자 등 보호법 준용 조치를 신청 할 수 있다.
-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특정범죄제보자 등 보호법」 준용 내용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제보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보자등의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법원·변호인 등으로부터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라

도 제보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영상물 촬영) 제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 시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수 있으며 이에 담긴 진술을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증인으로 소환된 범죄제보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제보인 등을 퇴정시키거나 비공개 장소에서 신문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및 변호인등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5 — 4
심사 및 조사 단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서울시 공익제보 심사 및 조사 과정

• 시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가 접수되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조사를 배분한다.

구분	제보 제기 내용	조사 기관
부패신고 및 공직자 비리 신고	•시 공무원 관련 •시 공직유관기관 임원 관련 •시 공무원 등/업체 공모 관련 •종합적 부패 관련	시 조사담당관
	•시 계약/위탁/지원 업체 등 관련	시 소관업무 담당관
	•자치구 공무원 관련 •자치구 계약/위탁/지원 업체 관련	자치구 감사담당관 ➞ 자치구 소관업무 과
	•공직유관기관 직원 관련 •공직유관기관 계약/위탁/지원 업체 관련	기관 감사실

공익신고	•시 소관사무 공익신고	시 소관업무 담당관
	•자치구 소관사무 공익신고	자치구 감사담당관 ➡ 자치구 소관업무 과

- 시 조사담당관 및 자치구 감사담당관, 공익유관기관 감사실은 해당 공무원 및 직원 관련 부패신고 조사를 수행한다.
- 시 소관업무 담당관 및 자치구 소관업무 과는 소관 계약/위탁/지원 업체에 대한 부패신고 및 소관업무에 관련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다.

조사 중 주의사항

- 조사기관은 제보사항을 확인 및 조사하기 위해 제보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제보자 등의 인적사항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하고, 신고내용에 제보자등의 신원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또한, 제보자에게 사건처리 상황 및 주의사항을 신속히 알려주어 신뢰감을 유지해야 한다. 제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사건관리 시 주의사항

- 제보 서류 및 사건기록 등은 가급적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하고,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문서고 등에 별도 관리한다.
  - 온라인·오프라인 사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보유
- 전산담당자나 임·직원 등이 제보 내용에 접근·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 비밀번호는 업무담당자만 숙지
  -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 외의 사람이 제보 내용에 접근·열람하였는지 여부를 항시 확인
- 제보 내용만으로도 신고자의 신분을 추정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내용 등도 블라인드 처리한다.

현장조사 시

- 기관 기업 방문 시에는 조사목적 및 제보자 보호 제도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다. 필요시에는 비밀 준수 서약서를 징구한다.
- 현장조사 시 신고서, 신고상담처리부 등의 서류를 복사해서 휴대해서는 안되며,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요약해서 참고한다.
- 관련자 조사를 위해 현장방문 시 휴대용 노트북 및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기관 장비를 사용 시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증거확보 시

- 소속기관의 설명 또는 제출자료 검토 시 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평가로 제보자를 매도하지 않는지 유의한다.
- 이해관계인·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협조자도 공익제보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지원되며, 해당 위법에 관련되었더라도 형 및 징계가 감면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협조를 구한다.

신고자에게 안내할 사항

- 처리상황에 대한 주기적 통보 신고자가 처리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처리결과를 속단하여 언론기관 등에 제보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보하여 제보가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는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 사건처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신고자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지한다.
- 신고자에게 연락시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유의해야 한다.
  - 신고자의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 등 이용
  -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통화할 것
  - 조사결과 통보문서 등 관련 공문은 신고자의 직장이 아닌 자택으로 발송

의도치 않은 제보자 신분노출 사례

- 현장 방문하여 사건 조사 중 프린터 연결상태를 확인 하지 못해, 공용 프린터기로 신고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되어 제보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있으니 신중을 요한다.

- 제보 상담 내용을 가지고 현장 방문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계 기관 직원이 서류를 보게 되어 제보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도 있다.
- 컴퓨터, 프린터, 팩스 등을 사용할 때 사용 내역을 삭제하는 등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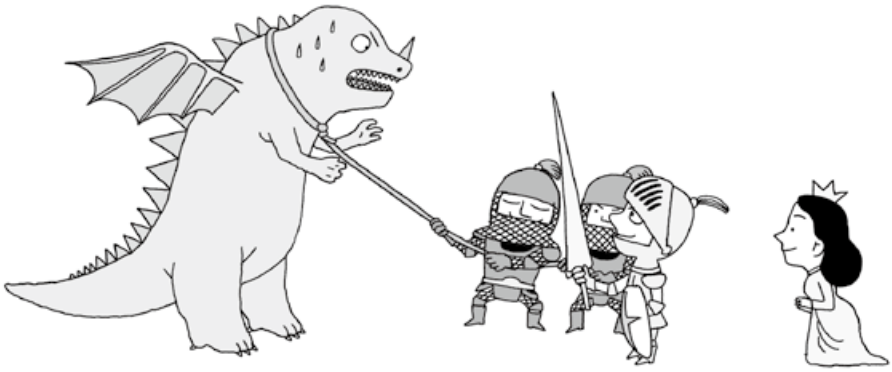

5 – 5
제보 처리 단계

사건의 처리결과 확인

- 조사기관은 제보 사건을 확인하고 그 결과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인 경우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한편 2016년도부터는 불이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특별보호조치가 시행된다. 신고당시 불법행위가 특정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인지를 시민이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믿고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호요건에 추가하였다.

보호요건

(기존) ① 공익침해행위가 ② 발생하였거나, ③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④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

(추가) ⑤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결과 처리

- 조사기관에 접수된 신고인 경우,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 관할이 아닌 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송하고 제보자에게 이송사실 등을 통지한다.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종결 처리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제보인 경우 조사 종결 후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에 대하여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공익신고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월 1월 25일부터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0조 제4항~제5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7항~제8항)
- 이첩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이첩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이송은 금지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서울시 공익제보 접수 처리절차

신청 (제보자)	**〈신고접수기관 및 신고서 기재사항〉** ▶신고접수기관은 해당기업, 시, 시의원, 공익제보지원위원회임 ▶신고방법은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 활용(전화는 상담만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은 ①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 ② 위법행위를 하는 자 ③ 공익제보 내용 ④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	
접수 (조사기관)	**〈접수 해당요건 확인〉**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확인 ▶공익제보 접수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공익제보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
⬇	
확인 (조사기관)	**〈신고대상 여부 및 사실관계 확인〉**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대상 여부 확인 ▶신고 진위 여부 확인 및 분석
⬇	
분류·이첩 (조사기관)	**〈지도감독 권한으로 신고사항 이첩〉** ▶법령, 조례 등 시 소관사무 등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조사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감독기관)에 따라 이첩 ▶제보자에게 이송 사실 통지
⬇	
처리 (조사기관)	**〈신고사항 조사〉**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감독기관)에서 조사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제보자에게 결과 통보
⬇	
사건 종결 및 보호·보상 처리 (조사기관)	**〈사건 종결 및 제보자 보호지원〉** ▶보호지원 요구 및 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 ※ 보호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 안내

5 — 6
보호지원 상담

보호지원 상담 시 안내사항

- 공익제보 특히 내부고발은 신분이 노출된다면 불이익조치가 가해지기 쉽다.
- 진행 중인 또는 처리된 공익제보 사건의 제보자는 불이익조치를 받게 되면 조사 담당자에게 먼저 보호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 상담 시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경청하되,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중립적 자세를 견지한다.
- 불이익조치 내용 및 보호지원 요구를 청취한 후, 다음 장의 공익제보 운영관련 Q&A(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 및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제도 안내를 보고 해당 제도를 설명한다.
- 우리 시의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지원 조사 협조 요청

- 우리 시에 제보하고 조사 처리한 공익제보자도 불이익조치를 받게 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인 우리 시에 통보하고 공익제보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협조 요청 시 확인사항 ① 보호대상 여부

- 제보의 동기·목적, 요구인의 진술 및 제출 자료를 토대로 법령상 공익제보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 즉, 제보의 내용이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및 공익침해 행위 개념범위에 해당하며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제보자의 제보 동기·목적은 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요건은 아니나, 보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다. 허위신고 및 부정 목적 여부에 따라 접수된 제보가 보호대상이 되는지 달라지므로, 제보자의 동기 및 숨겨진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부패신고의 경우 부정목적의 신고가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 요건이 아니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정당한 공익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화(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되어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목적의 신고 여부를 신고 접수 시의 정황만

으로 판단하는 것 보다는,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또한, 제보자 보호사건 조사시 불이익처분에 대한 판결·결정 등에서 확정된 사항,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은 불이익조치 조사가 제한된다.

보호대상 여부 판단 시 업무담당자 유의사항

- 제보자가 상담 및 조사 과정에서 공익목적 이외에 숨겨진 신고목적을 언급(암시)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제보자가 취하 등을 이유로 혹시 피제보자나 속한 기관에 금품 또는 승진·계약 연장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제보자에 대한 징계 등 불이익 처분 절차의 진행 유무를 확인한다.
- 제보자의 속한 기관이나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보자를 부당하게 매도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진술요구 및 자료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한다.

협조 요청 시 확인사항 ② 불이익 발생 여부 확인

-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공식적·전형적인 불이익조치의 경우 불이익 발생 여부 판단이 용이하여 제보자 보호가 쉽게 이뤄질 수 있으나, 비공식적·비정형적 불이

익의 경우 그 판단이 어렵다.

따라서 신고와 그로 인한 불이익 간의 시간적 선후관계 및 실질적 관련성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최근 법원은 공익제보자에 가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전통적인 해고, 파면뿐 아니라 면접탈락 등도 인정하는 등, 넓은 폭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다.

공익신고가 면접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호조치는 정당

"공익신고와 면접 탈락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음을 고려하면 甲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채용될 수 없는 결정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익신고가 탈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점, 乙의 진술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乙이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은 공익신고를 원인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과정에서 탈락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甲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乙에게 보호조치를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서울행법 2014.5.15, 선고, 2013구합26507

불이익 발생 여부 판단 시 체크포인트

- 신고와 신고로 인한 불이익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보자 소속기관에서 제보 사실을 따로 인지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한다.

–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 제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제보와 제보로 인한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파악한다.
  –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지 확인한다.
  – 제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통상적인 징계수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파악한다.
  – 제보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사유가 독자적인 징계사유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만큼 사소하지 않은지 파악한다.

조사 후 국민권익위원회 후속조치

- 국민권익위원회는 불이익조치의 유형에 따라 신분보장 조치, 원상회복 조치 등을 불이익조치한 기관 및 개인에 요구할 수 있다.
- 조치 통보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 시 징계,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 7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제도

- 우리 시는 공익제보 지원법제 상 조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조치 등의 처분권은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에 의해 위임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보호조치 및 원상회복조치를 처분할 수 없다.
- 그러나 자치조례로서 성립 가능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책은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시
공익제보 조사권	×	○
불이익조치자에게 원상회복조치 처분	○	×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	○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 ① 구조금의 지급

-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임료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시는 구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 ② 보상금의 지급

- 공익제보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시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제보로 인해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보상금은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상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 단, 공익신고 보상금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201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기존 4~20%에서 4~30%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시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은 신고유형(부패신고/공익신고)에 관계없이 지급기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각 신고유형에 따라 상위법을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2016년 5월 조례를 개정하였다.
- 이후 서울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상금 산정기준을 따르면 구간비율에 따른 차등지급에서 보상대상가액이 커질 경우 그에 따른 보상금의 증가분을 크게 감소하여 공익신고 행위로 인해 국가 등이 얻은 수입증대 회복액이 크면 클수록, 보상 비율은 작아지는 역설적 결과가 초래하고 보상금 최대 금액을 20억 원으로 제한함으로서, 공익신고 행위로 인해 국가 등이 얻은 수입 증대 또는 회복액이 일정 액 이상(현 별표2 규정으로 보상대상 가액이 453.5억 이상)이 되면, 보상금 지급이 20억 원에서 멈추게 되어 있어 2017년 9월 시가 조례로 지급하는 공익제보 보상금의 지급 시 최대 지급한도액을 없애고 보상대상 가액 대비 정률로서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 보상대상 가액 산정 시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 조례 규정 및 보상금 제도의 취지, 민간위탁기관의 회계에 관한 위수탁협약서 규정 등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서울시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기관의 사업외 수입으로 환수되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상대상 가액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2019.3.25.)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 ③ 포상금의 지급

•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2016년 5월 19일 조례를 개정하여 다음의 사유로 시 재정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피신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중지, 기소유예,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 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관계 법령 및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통하여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다만 제2조제9호의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은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부패신고 및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하며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 보호지원 제도 ④ 기타

- 시는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월 평균액을 지급할 수 있다. 월 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시는 공익제보자등의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자료 5

공익제보 운영관련 Q&A[18]

공익제보 처리관련

Q 공익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익제보를 하려는 사람은 ①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위법행위를 하는자(피신고인) ③ 공익제보 내용 ④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공익제보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합니다.

17 2017 국민권익위원회 발간「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조사기관 업무매뉴얼 Q&A 발췌 및 참고

Q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공익제보 접수기관이라 하면 어떤 거죠?

A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는 ①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② 서울시 ③ 시의원 ④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신고는 기명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는 상담만 가능합니다.

Q 공익제보 접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은 공익신고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공익신고에 대해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신고한 허위신고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공익신고의 접수 단계에서 판단하기에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신고·민원 등에 대해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에 적합합니다. 즉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익명의 공익제보도 접수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인

적사항과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내용 등을 명시한 신고서와 함께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기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서와 같은 무분별한 익명의 신고를 허용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신용과 프라이버시 등을 해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기관(행정·감독기관) 등 공익제보를 접수받는 기관은 신고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우편 등으로 익명의 신고가 제출되더라도 이는 공익제보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공익제보로 보지 않는 익명의 신고라도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서울시는 조례상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제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시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시 소관사무인 경우 내부 제보자가 익명을 원할 경우 공익제보 안심변호사제도를 안내하고 변호사와 연결하여 줍니다.

Q 전화로 공익제보를 신고하는 경우도 접수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는 신고대상과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한 문서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이를 공익제보로 접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화로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공익제보 대상 행위의 증거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공익제보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부정목적 신고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고를 말하는 것인가요?

A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목적 신고로는 신고를 비밀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승진 등 근로관계상 특혜를 위해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목적 신고 여부를 신고 접수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 후 공익신고를 하였다든지, 보상금을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 신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익제보 보상금 및 구조금 관련

Q 공익제보를 하면 언제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만 서울시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공익제보로 인하여 ①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과징금 부과 ③ 지방세의 부과 ④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보상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부패신고는 4~30%를,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해당 법률	지급기준
부패신고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 보상대상가액의 4~30%를 지급 ▶ 지급한도액 : 최고 30억원 (2015.10 시행)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보상대상가액의 4~20%를 지급 ▶ 지급한도액 : 최고 20억원 (2016.1 시행)

4~20%로 지급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 1월 25일부터는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서울시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 소관 사무에 관련한 공익제보자는 우리 시에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공익제보로 인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를 정률로 지급하며 공익신고는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해 지급합니다.
단,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Q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보상금의 지급액의 산정 시 ①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② 신고한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③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④ 신고자가 부패행위사건의 해결 및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⑤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보상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78조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

Q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공익신고자와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및 그 협조로 인하여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③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소관 사무에 관련한 공익신고자는 우리 시에도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Q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와 이로 인한 불이익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 이전에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었으면 그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을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손실액은 36개월을 초과하

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임금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최대 36개월분의 임금손실액만 구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임금손실액도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을 의미하는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불이익조치가 발생 이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액이 이보다 높다 하더라도 최대 평균임금의 2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항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제4호

Q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어떤 절차로 지급됩니까?

A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에 의하여 ①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④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⑤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개정(2015.10.20)에 따라 지급기준이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5억원 이하이며, 그 외에는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익신고인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년도부터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관련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2015.7.24 개정, 2016.1.25 시행)

서울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른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상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관련근거 : 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관련[18]

Q 공익신고로 인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A 불이익조치에는 공식적 정형적인 불이익과 비공식적 비정형적 불이익이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① 파면 해고와 같이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② 징계·정직·감봉·전근·직무 미부여·직무재배치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③ 성과평가·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의 차별 지급 ④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⑤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⑥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조사 또는 그 결과의 공개 ⑦ 인·허가의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 ⑧ 물품계약·용역계약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

18 2017 국민권익위원회 발간「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조사기관 업무매뉴얼 중 pp.88~92 발췌

Q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공익신고자나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Q 공익신고로 인한 보호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A 주요 보호조치로는 ①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제공하는 신변보호 ② 파면 , 해임 등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차별·체불된 보수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호조치 ③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④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자신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이 있습니다.

Q 보호조치 신청과 동시에 다른 구제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행정적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먼저 신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적 구제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먼저 신청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구제 청구와는 달리 해고무효확인소송 등과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의 제기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보호조치 신청이나 결정 등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송의 제기 후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신청이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신고의 동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

A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그리고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 및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이나 금품요구 등 부정한 목적을 위해 신고한 사람까지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본인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그렇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비밀보장, 신변보호, 원상회복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례별로 위법행위의 중대성, 동기나 경위, 공익신고 외의 징계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Q 공익신고자는 아니지만 공익신고나 보호조치 관련 조사·소송 등에서 협조하다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확인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나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나 소송 등에서 동료 직원 등이 공익침해행위 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사실대로 진술하거나 증언해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러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동일하게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공익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금지되나요?

A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 기관의 종사자가 외부 청탁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유출하는 행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집단따돌림을 하는 행위, 공익신고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행위 등이 처벌받게 됩니다.

Q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공익신고를 이유로 하는 불이익조치 및 이에 대한 보호는 근로계약의 형태나 유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견근로자의 교체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거절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

호받을 수 있습니다.

Q 공익신고로 인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공익신고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 등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 등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하는 부정목적 신고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록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자 지원 참조 법령

부록 1_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록 2_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록 3_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록 4_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부록 5_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부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 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

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내부규정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

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

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

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신분보장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

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

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

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

[본조신설 2016. 3. 29.]

[제목개정 2019. 4. 16.]

[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10. 31.]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

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1조의3(국민권익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

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제8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

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조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

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

부칙 〈제16324호, 2019. 4.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분보장등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각각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소송의 제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4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6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화해의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 개정규정(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포상, 포상금, 보상금 및 구조금에 관한 적용례) 제68조 및 제70조의2(보상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제6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부록 2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8. 11. 1]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⑧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

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
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
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

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 1. 14.]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 7. 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

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본조신설 2017. 10. 31.]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

부칙 〈제15616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가 보호조치결정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제2조제1호 관련)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
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4	가축전염병예방법
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6	개인정보보호법
7	개항질서법
8	건강검진기본법
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1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11	건설기계관리법
12	건설기술진흥법
13	건설산업기본법
14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법
15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16	건축법
17	건축사법
18	검역법
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	경륜·경정법
21	경비업법
22	계량에관한법률
2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2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5	고용보험법
26	골재채취법
27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28	공연법
29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30	공인중개사법
31	공중위생관리법
32	관광진흥법
33	광산보안법
34	광산피해의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35	교통안전법
36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37	국가기술자격법
38	국민건강증진법
39	국민건강보험법
40	국민영양관리법
41	국민체육진흥법
42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43	국제상거래와국공무원뇌물방지법
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5	궤도운송법
46	근로복지기본법
47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48	금융지주회사법
49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5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51	낚시관리및육성법
52	내수면어업법
53	노인복지법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5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5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5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58	농약관리법
59	농어촌도로정비법
60	농어촌정비법
61	농업기계화촉진법
62	농지법
63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관리법
64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특별법
65	대규모유통업에서거래공정화법
66	대기환경보전법
67	대부업등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68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69	대외무역법
70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71	도로교통법
72	도로법
73	도선법
74	도시가스사업법
75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76	도시철도법
77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7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79	동물보호법
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81	말산업육성법
82	먹는물관리법
83	모자보건법
84	무인도서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8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86	문화재보호법
87	물가안정에관한법률
88	물류정책기본법
89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9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91	방사성폐기물관리법
92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9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94	보험업법
95	복권및복권기금법
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97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98	비료관리법
99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
100	사격및사격장안전관리에관한법률
101	사료관리법
102	사방사업법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4	사회복지사업법
105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106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107	산림보호법
10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109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1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112	산업안전보건법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산업표준화법
115	산지관리법
116	상표법
117	상호저축은행법
118	새마을금고법
11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120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121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122	석면안전관리법
12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124	선박안전법
125	소금산업진흥법
126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127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129	소비자기본법
130	소재·부품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131	소하천정비법
132	송유관안전관리법
133	수난구호법
13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135	수도법
136	수산생물질병관리법
137	수산업법
138	수산자원관리법
139	수상레저안전법
14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141	습지보전법
142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14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144	식물방역법
145	식물신품종보호법
146	식품산업진흥법
147	식품안전기본법
148	식품위생법
149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15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51	아동복지법
15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153	아이돌봄지원법
154	악취방지법
155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15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57	약사법
158	양곡관리법
159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160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161	어선법
162	어장관리법
163	어촌·어항법
16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16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66	여신전문금융업법
167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168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법
169	영유아보육법
170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171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법
17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173	외국환거래법
174	외식산업진흥법
175	원자력시설등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176	원자력안전법
177	위생사에관한법률
178	위험물안전관리법
17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180	유선및도선사업법
181	유아교육법
182	유전자변형생물체국가간이동등관한법
183	은행법
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85	응급의료에관한법률
186	의료기기법
187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188	의료법
189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
190	인삼산업법
191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192	임대주택법
19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194	입양특례법
195	자격기본법
196	자동차관리법
197	자연공원법
198	자연재해대책법
199	자연환경보전법
20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01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20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20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04	장애인복지법
205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06	재해구호법
207	저수지·댐의안전관리및재해예방에관한법률
208	전기공사업법
209	전기사업법
210	전기용품안전관리법
211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212	전기통신사업법
213	전력기술관리법

214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215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16	전통주등의산업진흥에관한법률
217	정보통신공사업법
218	정보통신기반보호법
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20	정신보건법
221	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
22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등특별법
223	제품안전기본법
224	종자산업법
225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26	주택법
227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228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229	지역보건법
230	지진재해대책법
231	지하수법
232	직업안정법
233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관한법
234	집단에너지사업법
235	철도사업법
236	철도안전법
237	청소년보호법
238	청소년활동진흥법
23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40	초고층및지하연계복합건축물재난관리법
241	초지법
24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243	축산물위생관리법
244	축산법
24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관리지원법
246	토양환경보전법
247	폐기물관리법
248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249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250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5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25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53	하수도법
254	하천법
255	학교급식법
256	학교보건법
257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58	한강수계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법
259	한국마사회법
260	할부거래에관한법률
261	항공법
262	항공보안법
263	항로표지법
264	항만법
265	항만운송사업법
266	해사안전법
267	해양생태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
268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
269	해양환경관리법
270	해운법
271	혈액관리법
27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73	화장품법
274	화학물질관리법
275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
276	환경보건법
27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278	환경영향평가법
27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80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 법률
281	방위산업기술보호법
28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8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284	방위사업법

부록 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 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6324호, 2019. 4.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패행위의 신고자""를 ""신고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를 ""신고""로 한다.

부록 4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9. 10. 10.] [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 10. 1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10〉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보조금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단위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에 속하는 실·본부·국과 이에 준하는 행정기구 및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

나. 시 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본부·국에 포함한다.

5. "행동강령총책임관"이란 행동강령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감사위원장이 된다.

6. "행동강령책임관"이란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해당 단위기

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상당 공무원이 된다. 다만, 청년청·기술심사담당관·인권담당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7. "이해충돌"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8. "이해충돌상담관"이란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 회피, 보유재산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하고,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단위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지침 제정·시행) ① 각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②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단위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의 제·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전문성 등) ①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 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단위기관의 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공무원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행정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직무관련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금전거래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나. 시 퇴직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다.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라.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조치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청 대상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고위공무원의 재정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① 고위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위공무원은 매년 1회 자신의 수행직무와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보유재산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가 진단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충돌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이해충돌상담관이 당해 공무원의 보유재산과 수행직무와의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 이해충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위공무원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 및 보유재산의 범위, 심사 절차 및 방법 등 이해충돌 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 및 부시장(행정1·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

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이하 "행동강령(총)책임관"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시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 및 부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또는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시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제1항에서 제한하는 사적 접촉을 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와 인가·허가 등에 관한 직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의 업무에 속하는 직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의 필요에 의해 공직유관단체의 정관 등에 따라 당연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알선·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2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가상통화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입수한 사업계획 정보
2. 입찰과 관련하여 공개된 사항 이외의 정보
3. 입찰업체 등 관련 업체의 비공개 정보
4.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정보
5.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과 관련된 정보
6.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
7. 가상통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된 정보

제2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

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칙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10〉

1. 시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③ 공무원은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미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공무원교육원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4급 이하 공무원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2.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⑧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승인 요청하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제28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2항, 제4항 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제3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이 사법기관 또는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를 받거나 구금이 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제31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총)책임관·시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행동강령(총)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31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3조(징계 등) ① 시장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른 단위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그 내용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동 법률에 따라 신고·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금품등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처리

⑦ 행동강령책임관은 제6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2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교육)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 인재개발원장은 신규임용자 교육 등 교육과정에 이 규칙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등) ①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단위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록 5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시행 2018. 1. 18.] [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 2018. 1. 18.,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1.18〉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시금고 및 시비 보조단체·기관
3.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4. 자치구, 자치구금고 및 자치구비 보조단체·기관 (「지방자치법」제167조부터 제17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

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감사계획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통보) ①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④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조정 등) ① 자치구 및 자체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기

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연도개시 15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 중 감사사항, 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범위, 감사기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된 연간감사계획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을 시의 감사계획과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7조(감사실시 통보) 위원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는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1.〉

제8조(중복감사 지양) 시 또는 다른 행정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생략) ① 위원회는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편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매 감사 시마다 감사공무원의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감사의 실시

제11조(사전준비)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세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출석·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

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15조(현지 조치) 감사반장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해당 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기간 중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 소관 담당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감사공무원은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일상감사) ① 위원회는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③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위원회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2. 계약업무
3. 예산관리 업무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⑤ 집행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위원회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⑥ 위원회는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⑦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감사결과의 처리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감사목적
2. 감사대상기관
3. 감사 실시 기간
4. 중점 감사사항
5. 감사반 편성
6. 지적사항 및 처분을 요하는 사항
7. 건의·시정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8. 모범이 되는 사항
9. 그 밖의 특기사항

제19조(감사결과 처분) ① 시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

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③ 시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 〈신설 2015.7.1.〉

④ 시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적극행정 면책)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

제21조(표창추천) 위원회는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고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목개정 2015.7.1.]

제23조(감사정보 관리) 위원회는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24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감사 등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사무 중 일부를 자체감사기구에 의뢰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1.〉

[제목개정 2015.7.1.]

제25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실시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26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제27조(재심의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5장 감사공무원

제28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29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기구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

한 것이어야 한다.

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 분실 확인서를 받고 대장에 기재·관리한다. 〈개정 2015.7.1.〉

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기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③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 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④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

제32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제보 완전정복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업무 가이드북 5.0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부서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제작 조사담당관 문혁
공익제보지원팀(팀장 명광복, 선동규, 유춘상)
전화 02-2133-3449
팩스 02-2133-1309
디자인 DesignZoo
ISBN 979-11-6161-788-6 13360

※ 비매품 (내부 공무원 교육용)

이 책은 가이드북이면서도 전문서적의 성격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각 장들을 선택하여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2장,

자신의 소관업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패 조사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3장,

소속 부서의 공익신고 소관업무를 알고 싶은 사람은 4장,

직접 공익제보를 접수하고 행정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5장을 먼저 읽기 바란다.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비매품/무료
13360
9 791161 617886
ISBN 979-11-6161-788-6